

의안번호	제506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월 15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용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6
----------	-----

발의연월일: 2024년 1월 15일

발의자: 박용규, 김현문, 이정범,
박병천, 박재주, 유상용,
이동우 의원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협동조합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복지증진과 실천적 경제교육 실현을 촉진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안 제2조)
- 다. 교육감과 학교협동조합의 책무(안 제3조)
- 라.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마. 지원사업(안 제5조)
- 바. 실태조사(안 제6조)
- 사.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아.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설치 등(안 제8조)

자. 우선구매 등(안 제9조)

차. 시설의 사용허가 등(안 제10조)

카. 포상(안 제 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복지 증진과 실천하는 경제교육 실현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공공조달”이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 과 활

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 정보제공
2. 학교협동조합 모델 개발·보급
3. 학교협동조합 연계 교육활동
4.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에 기여
5. 학교협동조합 홍보, 교육
6. 학교협동조합 간 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지원사업 추진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와 제5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명칭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인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모범이 되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협동조합이나 개인·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0.>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2022. 6. 28., 2023. 8. 22.>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 제1항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제31조 제2항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 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

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4. 20., 2023. 8. 22.>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7. 7., 2022. 4. 2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

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7. 12., 2018. 1. 9.,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목개정 2022. 4. 20.]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6. 21., 2022. 4. 20.>
- ④ 법 제22조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신설 2022. 4. 20.>
- ⑤ 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 6. 21., 2022. 4. 20.>
- ⑥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 7. 12., 2017. 7. 26., 2022. 4. 20.>
-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⑧ 법 제22조 제2항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2022. 4. 20.>

⑩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1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학교협동조합 운영 및 신규 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학교협동조합 운영교, 신규추진교, 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시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안 제4조, 안 제5조)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 정보제공
2. 학교협동조합 모델 개발·보급
3. 학교협동조합 연계 교육활동
4.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에 기여
5. 학교협동조합 홍보, 교육
6. 학교협동조합 간 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의 운영비·자산취득비의 기준단가로 하며 학교협동조합 운영교 운영, 신규추진교 설립 추진, 지원센터 운영, 협의회 운영, 사회적경제동아리 중점학교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추계함
※ 향후 학교협동조합 지원 활성화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 134,46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862,46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학교협동조합 운영교	84,000	91,000	98,000	105,000	112,000	490,000
학교협동조합 신규추진교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40,000
사회적경제 동아리 중점학교	0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협의회 운영	460	500	500	500	500	2,460
계	134,460	171,500	178,500	185,500	192,500	862,460

○ 산출내역

-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30,000천원
- 학교협동조합 운영인가교 7,000천원 × 연도별 학교수
- 학교협동조합 신규추진교 30,000천원

- 사회적경제동아리 중점학교 2,000천원 × 연도별 학교수
- 협의회 5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34,460	171,500	178,500	185,500	192,500	822,460
보통교부금	134,460	171,500	178,500	185,500	192,500	822,460
세 출	134,460	171,500	178,500	185,500	192,500	822,460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134,460	171,500	178,500	185,500	192,500	822,460
재원 조달	134,460	171,500	178,500	185,500	192,500	822,46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34,460	171,500	178,500	185,500	192,5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